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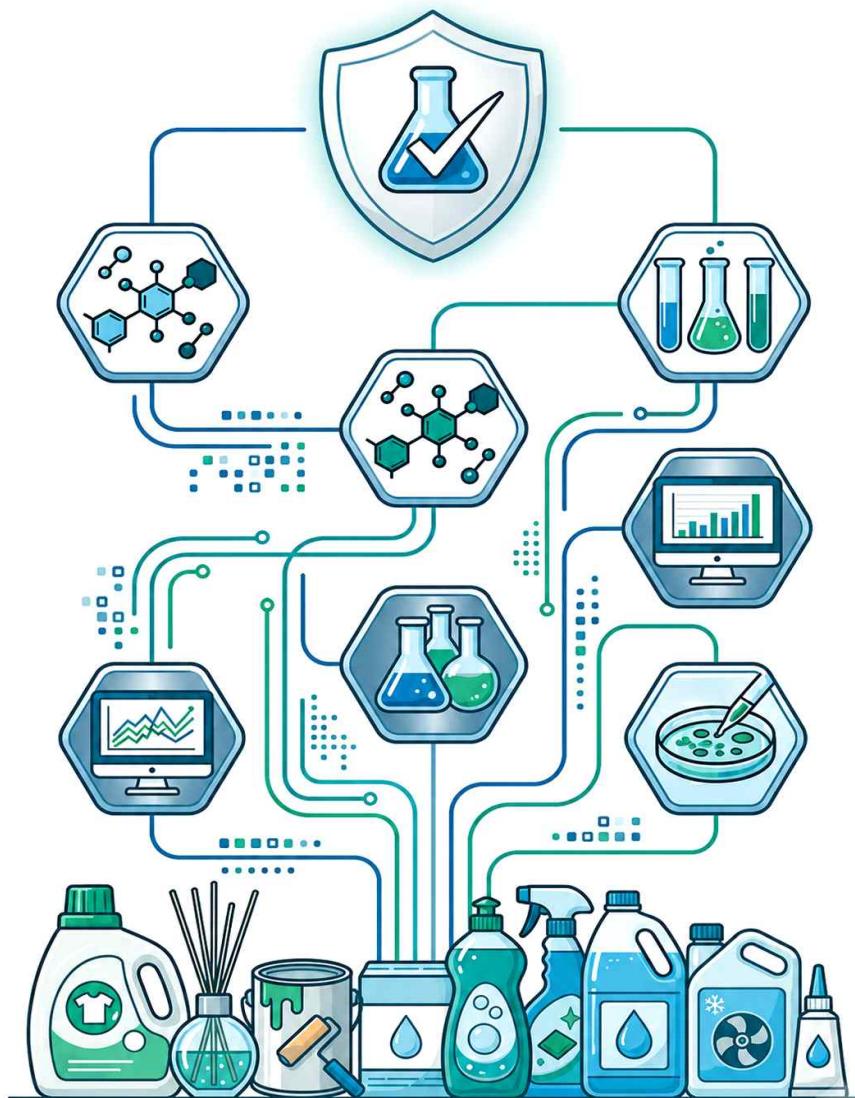
안전확인생활화학제품 적합확인 신고

유효기간 연장 ·

자율안전관리제도

신청 가이드라인

2026. 05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KEITI

2026년 5월 12일

발간 : 기후에너지환경부

작성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작성지원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리کم프로(주), 녹색소비자연대

발간 배경 및 목적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이하 '생활화학제품') 중 위해성이 우려되는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하 '안생품')"으로 지정·고시됩니다. 안생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받아 신고(법 제10조)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더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노력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특히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와 관련한 민·산·관의 이행협의체 운영을 통해, 기업은 제품에 사용된 원료 정보를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안전성 정보를 제공하는 자율적 안전관리 활동을 꾸준히 확대해 왔습니다.

2026년 5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연장기준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그간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기업의 자율적 안전관리 활동이 제도적 지원방안의 하나로 공식 연계되었습니다. 연장기준고시는 기업의 자발적 안전관리 활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안전정보공개 및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이하 '화우품')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체화한 것으로, 안생품 제조·수입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기술적 조치를 취하거나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의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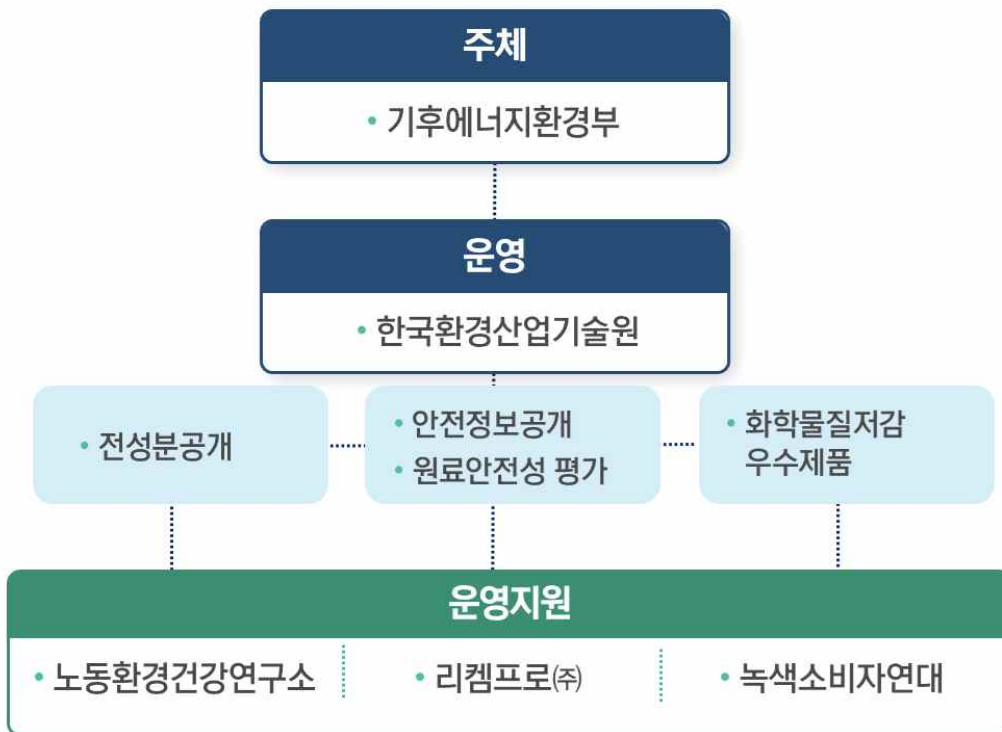
특히 연장기준고시는 안전정보공개 또는 화우품 선정에 필요한 원료의 위해성 관리등급을 결정하기 위하여 원료안전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에 사용된 원료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원료안전성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 기업이 해당 평가의 실시를 요청

할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기업이 더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을 생산·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효기간 연장·전성분공개·안전정보공개·화우품·원료안전성평가 등 자율안전관리제도에 쉽고 정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본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에서는 본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하시어 자사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자율안전관리제도 참여를 통해 안생품 적합확인 신고 유효기간 연장의 혜택을 받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참고. 자율안전관리제도 운영 체계>



목차

PART

I

안생품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

가. 유효기간 연장 개요	09
나. 유효기간 연장신청 절차 및 방법	12
다. 체크리스트 및 별지서식	18

PART

II

전성분 공개

가. 전성분공개 개요	24
나. 전성분공개 신청 절차 및 방법	25
다. 체크리스트 및 별지서식	30

PART

III

안전정보공개

가. 안전정보공개 개요	38
나. 안전정보공개 신청 절차 및 방법	39
다. 표시등급 내용 및 표시방법	50
1. 라. 별지서식	52

PART
IV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가. 안전정보공개 신청 연계 58
나. 화우품 신청 절차 및 방법 63
다. 체크리스트 및 별지서식 69

PART
V

원료안전성 평가

가. 원료안전성 평가 개요 77
나. 원료안전성 평가 신청 절차 및 방법 77
다. 별지서식 80

부록

용어와 정의 82

1.

안전확인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 신청방법

가 유효기간 연장 개요

1 목적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연장기준고시’)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기업이 알기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유효기간 연장 대상

-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한 제조·유통을 위한 자율안전관리 제도에 참여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유효기간 연장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제품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유효기간 연장 범위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하 ‘안생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완료 후 전성분공개 참여시 1년 연장
 - 전성분공개 및 안전정보공개 참여시 1년 6개월 연장
 - 전성분공개 및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이하 ‘화우품’) 선정시 2년 연장
 - 안생품 적합확인 신고 및 전성분공개 절차 이행
 -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안생품 적합확인 신고 및 전성분공개를 필수로 이행해야만 안전정보공개 또는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 제도에 참여할 수 있음.

표 2. 자율안전관리제도별 자격조건 및 부여 유효기간

참여제도명	자격조건	부여 유효기간
안전기준 적합확인	필수	없음
전성분공개	필수	1년
안전정보공개	선택	1년 6개월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택	2년

- 동시신청

- 유효기간 연장 신청자가 원할 경우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및 자율안전관리제도 중 참여를 원하는 제도에 대하여 심사기간 단축 등을 목적으로 동시신청을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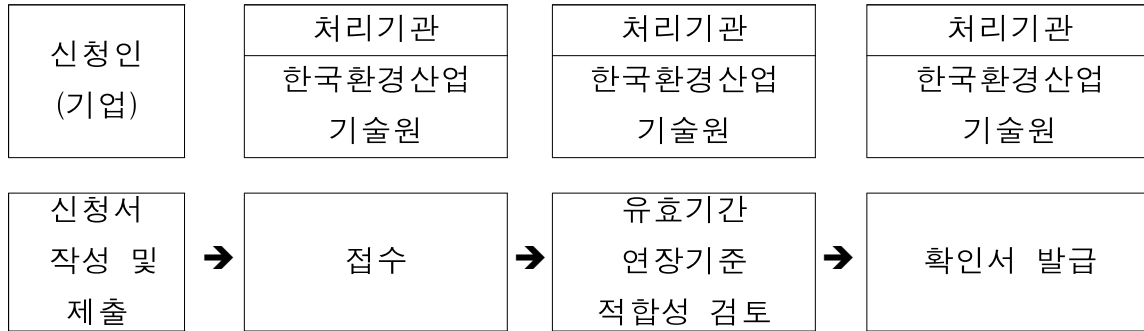
- 유효기간 연장 범위

-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제품은 **안생품 동일 신고번호의 모든 제품(대표 및 파생제품 모두 포함)**이 연장기준에 충족해야 함.
- 대표 및 파생제품이 각 제품 단위로 서로 다른 연장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대표 및 파생이 모두 해당하는 연장기준에 대하여 적용**. 이때, 둘이상의 연장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장 긴 기간을 적용.
- 유효기간이 연장된 대표제품에 그 연장된 기간 내에 새로운 파생제품을 신고하려는 경우, **기존에 연장받은 기간 이상의 기간이 적용되도록 자율안전관리(전성분공개, 안전정보공개, 화우품) 제도에 참여**.

나 유효기간 연장신청 절차 및 방법

1 신청 절차 및 방법

○ 신청절차



○ (신청방법) 전자메일(center@keiti.re.kr)로 접수

- 초록누리 시스템 기능 개선 이전('26.5.12~) 한시적 이메일 접수

○ (이메일 신청양식)

- 메일제목: [유효기간연장]업체명_제품명(신고번호)
- 파일명: (서류명)업체명_제품명(신고번호)
* 예시 (유효기간연장신청서)환기원_환기원 세정제(CA10-12-3456)

○ (신청기한) 신고번호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전까지 신청가능하며 원활한 검토를 위해 만료 7개월전까지 접수 권고

2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안내) 기업은 연장을 받고자 하는 제품에 대하여 하기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해야 하며 참여제도 확인서는 해당 제도에 참여중 또는 동시신청인 경우에 한하여 제출

- 일반신청

- (필수) 안생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 (필수) 유효기간 연장(변경)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 서식)
- (필수) 전성분공개 확인서(연장기준고시 별지 제4호서식)
- (선택) 안전정보공개 확인서(연장기준고시 별지 제6호서식)
- (선택)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확인서(연장기준고시 별지 제8호서식)

- 동시신청

- (필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적합확인 결과서(시험검사기관 발급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제출 또는 제출예정 서류)
- (필수) 전성분공개가 진행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선택) 안전정보공개 및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이 진행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유효기간 연장 및 관련 제도를 동시신청하는 경우 관련 절차가 진행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신청가능. 다만, 해당 제도의 최종 확인서가 모두 제출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연장 가능

- (필수) 유효기간 연장(변경)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서식 제공 위치)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필요한 서식 및 위치 경로 안내

표 7. 서식 및 위치

서식명	서식 출처	다운로드 누리집
<일반신청>		
필수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별지4호 서식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chemp.mcee.go.kr)
필수 유효기간 연장(변경) 신청서	유효기간 연장고시 가이드라인 별지1호서식	· 초록누리(ecolife.mcee.go.kr) 정보마당

서식명	서식 출처	다운로드 누리집
필수 전성분공개 확인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4호서식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chemp.mcee.go.kr)
안전정보공개 확인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6호서식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chemp.mcee.go.kr)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확인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8호서식	·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시 확인서 이메일 발송
<동시신청>		
필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신청 시험·검사기관 문의	· 신청 시험·검사기관 문의
필수 유효기간 연장(변경) 신청서	유효기간 연장고시 가이드라인 별지1호서식	· 초록누리(ecolife.mcee.go.kr) 정보마당
필수 전성분공개(변경) 신청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2호서식	· 초록누리(ecolife.mcee.go.kr) 정보마당
안전정보공개(변경) 신청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5호서식	· 초록누리(ecolife.mcee.go.kr) 정보마당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변경)신청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7호서식	· 초록누리(ecolife.mcee.go.kr) 정보마당 ·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사이트 내 심사신청-서식자료 (safetychem.org)

3

서류 작성 및 신청 요령

- (공통사항) 제출서류 작성시 공통 유의사항
 - 정보일치 : 모든 서류상의 기업정보(업체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제품정보(신고번호, 구분, 품목, 용도, 제형, 중량·용량·매수) 은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와 동일
 - 최신성 유지 : 제출된 자료가 가장 최신에 신청한 정보와 동일해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신고 선행 필요
 - 날인·날짜 확인 : 신청서 및 확인서의 서명 또는 날인 및 날짜 확인
 - 신고번호 제품확인 : 신청하는 제품의 신고번호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 (대표·파생제품)에 대한 동일조건 또는 최소조건 충족 확인
- (서류별 작성요령) 주요 서류별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 유효기간 연장 : 동일 신고번호를 사용하는 모든 대표·파생제품이 자율안전관리에 참여해야 하며 신청 서식의 '뒷면' 기재 필수
 - 예시) 동일 신고번호 제품 A, B, C가 참여제도 상이할 경우

표 8 용어의 정의

구분	전성분공개	안전정보공개	화우품	부여 연장기간
제품 A(대표)	참여	참여		1년
제품 B(파생)	참여		참여	1년
제품 C(파생)	참여	참여	참여	1년

- 안전기준 적합확인서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결과서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로 화학제품 관리시스템 등록 및 유효기간 연장 신청시 제출
- 전성분공개/안전정보공개/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 동일 신고번호를 사용하는 모든 대표·파생제품의 참여제도에 대한 내용을 신청 서식의 '뒷면' 기재 필수

4

기타 유의 사항

- **(신청기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번호 유효기간 만료 또는 동시신청시 확인결과서 제출기한(발급 후 30일이내)이 지난 제품은 신청 불가
- **(서류보완)** 서류 적합성 검토중 보완사항 발생시 이메일로 통보되며 통보 후 영업일 기준 10일이내 보완되지 않을 경우 신청 반려 가능
- **(사실확인)** 기업이 제출한 확인서 및 증빙자료의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유효기간 연장 승인취소 및 관련법령에 따른 처리가능
- **(변경신청)** 유효기간 연장을 승인받은 제품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참여제도 및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변경신청 필요
- **(갱신신청)** 유효기간 만료로 안생품 적합확인 신고 갱신 기간이 도래한 경우 안생품 적합확인 신고 갱신을 신청 또는 완료한 후, 유효기간 연장 갱신신청을 할 수 있음.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해야 함.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예시

검토항목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유효기간 연장 고시 준용지침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유효기간 연장(변경) 신청서

※ 식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	------	------

1. 신청인 정보

상호(명칭)	환기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0000-11-2222	성명(대표자)	김환경
소재지(사업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연락처: 000-000-0000) (팩스번호: 000-000-0000)	
담당자 성명	이기슬	연락처	010-1234-5687	전자우편	eco@eco.co.kr

2. 제품 정보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	CB11-22-3333				
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제조(OEM포함) <input type="checkbox"/> 제조(ODM) <input type="checkbox"/> 수입(제조국명:)		제조사:)		
품목	세정제	용도	일반용(욕실용)		
제형	비분사형(액체형)	종량·용량·매수	20, 450, 750, 1000mL		

3. 참여제도 정보

※ 참여 완료 또는 참여 신청인 제도에 대하여 체크박스에 표시를 하십시오

제도명(부여연장기간)	참여여부
전성분공개(1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참여 <input type="checkbox"/> 미참여
안전정보공개(1년6개월)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참여 <input type="checkbox"/> 미참여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2년)	<input type="checkbox"/> 참여 <input type="checkbox"/> 미참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유효기간 연장(변경)을 신청합니다.

2026년 05월 12일

신청인 김환경(환기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210mm×297mm(상자 800mm)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시 기업정보와 동일해야함

·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신고가 선행되어야 함

· 다만 담당자 정보 변경 가능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시 제품정보와 동일해야함

·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신고가 선행되어야 함

· 신고번호 제품중 가장 적게 참여한 제품 기준으로 체크

날짜, 성명, 서명 또는 직인 확인

(뒤쪽)

유효기간 연장 대상 제품 목록

연번	구분	제품명	참여제도 정보
1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표 <input type="checkbox"/> 파생	환기원 세정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성분공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안전정보공개 <input type="checkbox"/>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2	<input type="checkbox"/> 대표 <input checked="" type="checkbox"/> 파생	환기원 싹싹 세정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성분공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안전정보공개 <input type="checkbox"/>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3	<input type="checkbox"/> 대표 <input checked="" type="checkbox"/> 파생	환기원 쓱쓱 세정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성분공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안전정보공개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뒤쪽) 신고번호 당 쏘 제품 제도 참여여부 확인

참여제도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기간 결정

다

체크리스트 및 별지 서식

1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표 12. 유효기간 연장 신청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구분	점검내용	확인
공통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의 유효기간 만료 전인가?	
공통	동시신청인 경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가 영업일기준 30일 이내인가?	
공통	동시신청인 경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를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신청을 하였는가?	
공통	유효기간연장 신청서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정보가 동일한가?	
신청서 작성	직인 날인 및 날짜 작성이 되었는가?	
신청서 작성	기재된 제품정보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가 완료되었는가?	
신청서 작성	뒷면의 동일신고번호하의 대표·파생제품 참여제도 정보가 모두 기재되었는가?	
신청서 작성	파일명 및 파일형태(pdf 또는 hwp)가 기준에 적합한가	
신청서 작성	담당자의 연락처 및 이메일주소는 정확한가?	
증빙서류	하기의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는가?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증명서 또는 확인결과서	
	2. 유효기간 연장 (동시신청시) 신청서	
	3. 전성분공개 확인서 또는 (동시신청시) 신청서	
	4. 안전정보공개 확인서 또는 (동시신청시) 신청서	
	5.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확인서 또는 (동시신청시) 신청서	

2

유효기간 연장 서식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앞쪽)

유효기간 연장(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	------	------

1. 신청인 정보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사업장)	(연락처:) (팩스번호:)	
담당자 성명	연락처	전자우편

2. 제품 정보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			
구분	<input type="checkbox"/> 제조(OEM포함) <input type="checkbox"/> 제조(ODM) <input type="checkbox"/> 수입(제조국명: , 제조사:)		
품목	용도		
제형	중량·용량·매수		

3. 참여제도 정보

※ 참여 완료 또는 참여 신청인 제도에 대하여 체크박스에 표시를 하십시오

제도명(부여연장기간)	참여여부
전성분공개(1년)	<input type="checkbox"/> 참여 <input type="checkbox"/> 미참여
안전성정보공개(1년6개월)	<input type="checkbox"/> 참여 <input type="checkbox"/> 미참여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2년)	<input type="checkbox"/> 참여 <input type="checkbox"/> 미참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유효기간 연장(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m²]

유효기간 연장 대상 제품 목록

연번	구분	제품명	참여제도 정보
	<input type="checkbox"/> 대표 <input type="checkbox"/> 파생		<input type="checkbox"/> 전성분공개 <input type="checkbox"/> 안전정보공개 <input type="checkbox"/>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input type="checkbox"/> 대표 <input type="checkbox"/> 파생		<input type="checkbox"/> 전성분공개 <input type="checkbox"/> 안전정보공개 <input type="checkbox"/>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input type="checkbox"/> 대표 <input type="checkbox"/> 파생		<input type="checkbox"/> 전성분공개 <input type="checkbox"/> 안전정보공개 <input type="checkbox"/>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II.

**전성분공개
신청방법**

가 전성분공개 개요

1 목적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또는 ‘법’)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연장기준고시’)에 따른 전성분공개 절차 및 방법을 명시한 기술 지침서로써, 전성분공개를 신청하는 기업의 실무 중심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2 전성분공개 신청 대상

-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생품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아 신고를 완료한 제품을 대상으로 함
 - 전성분공개를 신청하려는 경우 안생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전성분공개 기준

- 전성분공개를 위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표 21. 전성분공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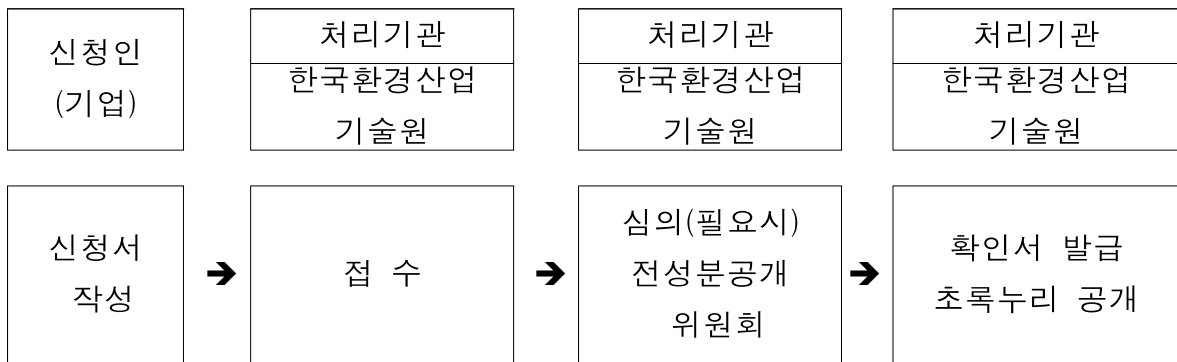
항목		기준
의도적 물질		사용한 모든 물질 공개
비의도적물질	유해물질	법에 근거를 둔 유해성 물질 등 ¹⁾ 각 물질별 0.01% 이상 물질 공개
	그 외 물질	각 물질별 제품내 함량 0.5%이상 물질 공개
예외사항		화학반응에 의해 제거된 물질 공개 제외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질
- 그 함량이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또는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에 따른 혼합물의 지정기준에 미치지 않거나,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규정」에 따른 혼합물의 분류기준에 미치지 않는 경우를 포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중점관리 물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살생물물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품에 의도적으로 함유된 나노물질

나 전성분공개 신청 절차 및 방법

1 신청 절차 및 방법

- (신청절차) 초록누리 시스템(ecolife.mcee.go.kr)을 통해 전성분공개 신청·접수·공개. 다만, 확인서는 시스템 개선('26.5.12~)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발급



- (신청방법) 초록누리 시스템을 통해 신청

(1) 초록누리 시스템에서 로그인(chemp.mcee.go.kr/login)

①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2) 홈>생활화학제품>자율안전관리제도>전성분공개 신청

홈 > 생활화학제품 > 자율안전관리제도 > 전성분공개 신청

전성분공개(변경)신청서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신고한 경우 이미 등록된 제품을 검색하여 신청을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전성분 공개 신청 제품은 관리자 승인 후, 전성분공개 제품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 1234567890123 접수일시: 2026-05-09 10:00:00 [수정](#) [신청](#) [목록](#)

기준제품정보 함유성분(전성분) 제품사진 정보

1. 제품선택

1. 신청인 정보

상호(명칭)	세명화학사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11-11-111111	성명(대표자)	홍길동
소재지(사업장)	서울시 중구 중일로 185				
연락처	02-111-1111	팩스번호	02-111-1112		
담당자 성명	이순신	연락처	111-11-111111	전자우편	smssoft@chemp.co.kr

① 안생품 신고번호, 제품명, 기업명 등을 활용하여 전성분공개 신청할 제품을 검색하여 선택

② 신청인 정보 작성 : 신청인정보는 안생품 신고시 작성한 자료가 자동 표출

담당자 성명	이순신	연락처	111-11-111111	전자우편	smssoft@chemp.co.kr
--------	-----	-----	---------------	------	---------------------

2. 제품정보

제품구분	대표제품
제품명	제품명제품명
품목·용도	품목용도품목용도
제형	분사형 / 호흡기노출 가능 제형 / 기타 제형
구분	제조(OEM포함)
중량/용량/배수	0.00g
신규/변경 분류	신규

3-1

구분	분류
호흡기노출제형	분무기형(포장 제외), 스프레이형, 분출형, 연수형, 연무형, 필터형 보충형(이들 제형에 사용되는 보충형 제품들 포함)
기타제형	액체형, 에멀션형(에이스트형, 로션형, 젤형), 분말, 고체형(분말형, 파스텔형, 스틱형), 팟제형, 분말형, 티슈형, 접착형, 기타 분말형(이들 제형에 사용되는 보충형 제품들 포함)

4

3. 제품성분

연번	물질구분	구분	용도(기능)	고유번호(CAS No. 등)	성분명	백합비(%)	주요물질여부

4-1 [물질추가](#)

③ 제품정보 : 안생품 신고시 작성한 자료가 자동 등록

③-1 제형 : 분사형의 경우 물음표를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후, '호흡기노출 가능 제형' 또는 '기타제형'을 선택

④ 제품성분 : 안생품 신고시 제출한 자료가 자동 등록

④-1 물질추가 : 원료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나, 화학반응 등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물질 등 추가 등록

5. 제품사진

전면사진 후면사진

• 제품사진

6. 기타첨부서류

첨부서류 물질안전보건자료.pdf 00.00KB

7. 추가자료제출

연장고시 제8.2항에 따른 첨부자료를 추가해주세요.
 1. 원료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2. 별지 제3호서식의 원료 공급자 확인서(동일 원료의 공급업체가 다양한 경우, 각 공급업체별로 모두 제출해야 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3. 안전기준 적용확인 신고명세서 또는 해당 품자가 신청 품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제1호(제2항(화학적분해)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업로드할 파일을 선택하시거나, 이곳에 파일을 드래그해주세요.

추가파일용량 00/20mb

물질안전보건자료.pdf 00.00KB

상기 입력된 사항은 전성분 공개 가이드라인 준수하였으며, 전성분 공개 사실확인서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자율안전정보(원료안전성 평가) 신청 (자율안전정보제 신청도 함께 진행 시, 체크박스에 체크해주세요.)
 (전성분 공개 신청이 완료되면 자율안전정보 신청 목록에 신청대기 상태로 표시됩니다.)

- ⑤ 제품사진 : 안생품 신고시 작성한 자료가 자동 등록
 - ⑥ 기타첨부서류 : 안생품 신고시 제출한 자료가 자동 등록
 - ⑦ 추가제출자료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원료공급자확인서, 신청서 ‘뒷면’ 유효기간 연장 대상제품 목록* 등 필수 제출서류 및 추가 필요 서류 등을 업로드(안생품 신고시 기 제출된 자료 제외)
- * 신청서 ‘뒷면’ 유효기간 연장 대상제품 목록 작성방법(예시)
- 하나의 안생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에 해당하는 대표제품 및 파생제품을 모두 기재하고, 제품별 참여제도 정보를 누락 없이 표시
 - 제품명은 안생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정보와 동일하게 작성
 - 제품이 많은 경우 표를 추가하여 작성 가능

<작성 예시>

연번	구분	제품명	참여제도 정보
1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표 <input type="checkbox"/> 파생	맑은집다목적 세정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성분공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안전정보공개 <input type="checkbox"/> 화학물질저감우수제품
2	<input type="checkbox"/> 대표 <input checked="" type="checkbox"/> 파생	맑은집다목적 세정제 라벤더향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성분공개 <input type="checkbox"/> 안전정보공개 <input type="checkbox"/> 화학물질저감우수제품
3	<input type="checkbox"/> 대표 <input checked="" type="checkbox"/> 파생	맑은집다목적 세정제 시트러스향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성분공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안전정보공개 <input type="checkbox"/> 화학물질저감우수제품



⑧ 신청 : 전성분공개 신청 정보를 모두 작성 후 동 페이지 상단으로 스크롤 하여 '신청' 버튼 클릭하고 신청 완료

2 원료 공급자 확인서 작성방법

원료 공급자 확인서 예시	검토항목																									
<div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margin-bottom: 10px;">원료 공급자 확인서</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 2px dashed blue;"> <tr> <td rowspan="2"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공급자</td> <td style="width: 35%;">상호(명칭) (주)환경기술 화학사</td> <td style="width: 55%;">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9999-88-7777</td> </tr> <tr> <td>성명(대표자) 김기후</td> <td>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에너지(전자우편: en@eco.com)</td> </tr>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원료 성분 정보</td> <td style="text-align: center;">연번</td> <td style="text-align: center;">성분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고유번호 (CAS No. 등)</td> <td style="text-align: center;">구성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성분</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수산화나트륨</td> <td style="text-align: center;">1310-73-2</td> <td style="text-align: center;">7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불순물</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에탄올</td> <td style="text-align: center;">64-17-5</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첨부서류</td> <td colspan="4"> ※ 원료 사상이 표를 추가하여 기입 1. 원료 물질안전보건자료 2. 원료공급사 제공 증명자료 </td> </tr> </table> <p style="margin-top: 10px;">원료의 전성분을 확인하여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p>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2026 년 05 월 12 일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margin-top: 10px;"> 신청인 김기후 </div> <p style="margin-top: 10px;">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p> <p style="font-size: 0.8em; margin-top: 5px;">210mm×297mm[복합지 80g/㎡]</p> </div>	공급자	상호(명칭) (주)환경기술 화학사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9999-88-7777	성명(대표자) 김기후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에너지(전자우편: en@eco.com)	원료 성분 정보	연번	성분명	고유번호 (CAS No. 등)	구성비	성분	1	수산화나트륨	1310-73-2	70%	불순물	1	에탄올	64-17-5	30%	첨부서류	※ 원료 사상이 표를 추가하여 기입 1. 원료 물질안전보건자료 2. 원료공급사 제공 증명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 공급자 정보 입력 · 원료명 및 불순물 정보 모두 입력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칸추가 가능 · 첨부서류 별첨 · 날짜, 성명, 서명 또는 직인 확인
공급자		상호(명칭) (주)환경기술 화학사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9999-88-7777																							
	성명(대표자) 김기후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에너지(전자우편: en@eco.com)																								
원료 성분 정보	연번	성분명	고유번호 (CAS No. 등)	구성비																						
	성분	1	수산화나트륨	1310-73-2	70%																					
	불순물	1	에탄올	64-17-5	30%																					
첨부서류	※ 원료 사상이 표를 추가하여 기입 1. 원료 물질안전보건자료 2. 원료공급사 제공 증명자료																									
※ 원료공급자에게 사전신청하여 기간내 제출가능토록 사전준비 권고																										

3

제출 서류

- 연장기준고시에 따른 전성분공개 신청 제출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초록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 면제 가능
 - (필수) 안생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또는 해당 절차가 진행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필수) 전성분공개(변경) 신청서(연장기준고시 제2호 서식)
 - (필수) 원료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 화학물질의 명칭, 함량, 고유번호(CAS No. 등) 등
 - (필수) 원료 공급자 확인서(연장기준고시 별지 제3호 서식)
 - 동일 원료의 공급망이 다양한 경우, 각 공급망별로 모두 제출
 - (필요시) 제조과정에서 화학반응을 통해 제거되는 물질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체크리스트 및 별지 서식

1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표 32. 전성분공개 신청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구분	점검내용	확인
신청서 작성	제품을 구성하는 모든 성분의 성분명과 CAS 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가?	
신청서 작성	제품의 최종 함량*(배합비)이 100%인가?	
신청서 작성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가 혼합물질인 경우 혼합물질 구성성분**의 성분명과 CAS 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가?	
신청서 작성	제품의 원료별 개별 함량*** (배합비)이 100%인가?	
신청서 작성	기재된 제품정보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가 완료되었는가?	
신청서 작성	뒷면의 동일신고번호하의 대표·파생제품 참여제도 정보가 모두 기재되었는가?	
신청서 작성	파일명 및 파일형태(pdf 또는 hwp)가 기준에 적합한가	
신청서 작성	담당자의 연락처 및 이메일주소는 정확한가?	
증빙서류	하기의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는가?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증명서 또는 확인결과서	
	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3. 원료 공급자 확인서	

* 제품의 최종 함량: 제품을 구성하는 단일/혼합물질의 배합비를 모두 더한 값

** 혼합물의 구성성분: 혼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CAS No. 부여된) 단일물질

*** 제품의 원료별 개별 함량: 혼합물질의 경우, 혼합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단일물질들의 총 함량

2

전성분공개 서식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앞쪽)

[] 대표
[] 파생

전성분공개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 신청인 정보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사업장)	(연락처:) (팩스번호:)			
담당자 성명	연락처	전자우편		
2. 제품 정보				
제품명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			
구분	<input type="checkbox"/> 제조(OEM포함) <input type="checkbox"/> 제조(ODM) <input type="checkbox"/> 수입(제조국명: , 제조사:)			
품목	용도			
제형	중량·용량·매수			
3. 제품 성분				
제품 성분 정보 (1) 의도적 물질				
①연번	②성분명	고유번호 (CAS No. 등)	③배합비(%)	④용도(기능)
1-1				
1-2				
제품 성분 정보 (2) 비의도적 물질				
①연번	②성분명	고유번호 (CAS No. 등)	③배합비(%)	④용도(기능)
2-1				
2-2				
※ 필요 시 상기 표를 추가하여 기입				
4. 제품 사진				
제품 앞면			제품 뒷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전성분공개(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유효기간 연장 대상 제품 목록

연번	구분	제품명	참여제도 정보
	<input type="checkbox"/> 대표 <input type="checkbox"/> 파생		<input type="checkbox"/> 전성분공개 <input type="checkbox"/> 안전정보공개 <input type="checkbox"/>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input type="checkbox"/> 대표 <input type="checkbox"/> 파생		<input type="checkbox"/> 전성분공개 <input type="checkbox"/> 안전정보공개 <input type="checkbox"/>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input type="checkbox"/> 대표 <input type="checkbox"/> 파생		<input type="checkbox"/> 전성분공개 <input type="checkbox"/> 안전정보공개 <input type="checkbox"/>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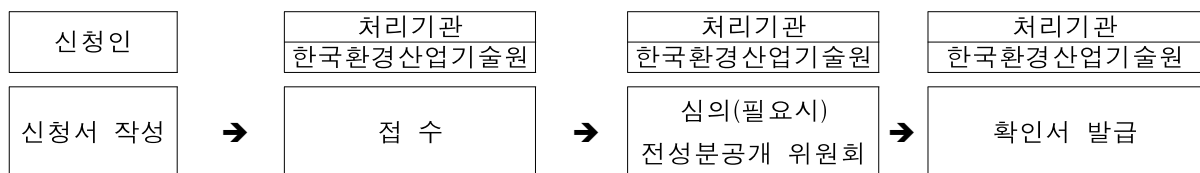
- 첨부 서류
1. 전성분공개(변경)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화학물질의 함량, 화학물질의 고유번호(CAS No. 등) 등이 적힌 원료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또는 원료 공급자 확인서(동일 원료의 공급망이 다양한 경우 각 공급망별로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2.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또는 해당 절차가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조과정에서 다른 물질과 반응하여 제품에 남아있지 않은 물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전성분공개 변경신청 시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성분공개 확인서 및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작성 방법

1. '신청인 정보'의 '담당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자로서 전성분공개(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2. '제품 정보'는 전성분공개(변경)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제품에 대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한 제품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3. '제품 성분'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7에 따른 기준에 따라 물질정보를 기재합니다. 다만 해당정보는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신고제품의 정보와 같아야 합니다.
 - ① 연번 : 함유된 개별 성분별로 번호를 부여하며, 성분이 혼합물질인 경우 해당 혼합물질을 구성하는 성분명을 하위 번호로써 기재합니다.
 - ② 성분명 : 법이나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물질명을 표기해야 하며, 법이나 고시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물질의 명칭은 화학물질 안전원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cee.go.kr)에 등재된 물질명, IUPAC(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 명 또는 CA(Cheical Abstracts)명에 근거하여 기재하거나 관용명으로 기재합니다.
 - ③ 배합비 : 성분의 함량을 정수로 기입해야 하되, 함유량이 1.0% 이하인 경우에는 소수점 세 번째 자리까지 기재해야 함. 다만, 혼합물질을 구성하는 성분의 경우 해당 혼합물질 제조업체에서 제공한 자료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상에 표시된 사항을 기재합니다.
 - ④ 용도(기능) : 해당 성분이 제품 내에서 발현하는 기능을 기재합니다(예: 산도조절제, 용매 등).
4. '유효기간 연장 대상 제품 목록' 항목은 해당 신고번호에 포함된 대표제품 및 모든 파생제품의 유효기간 연장 요건(전성분공개 및 안전정보공개 또는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참여현황을 누락 없이 기재합니다(필요시 행을 추가하여 작성).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III.

**안전정보공개
신청방법**

가 안전정보공개 개요

1 목적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연장기준고시’)에 따른 안전정보공개제도의 취지와 신청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신청 전 확인사항, 제출자료, 공개 대상 원료, 표시등급 및 공개 이후 변경관리 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함.

2 안전정보공개 대상

-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생품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아 신고를 완료한 제품으로서 전성분공개를 완료한 제품을 대상으로 함.

3 안전정보공개 기준

- 전성분공개를 위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표 43. 안전정보공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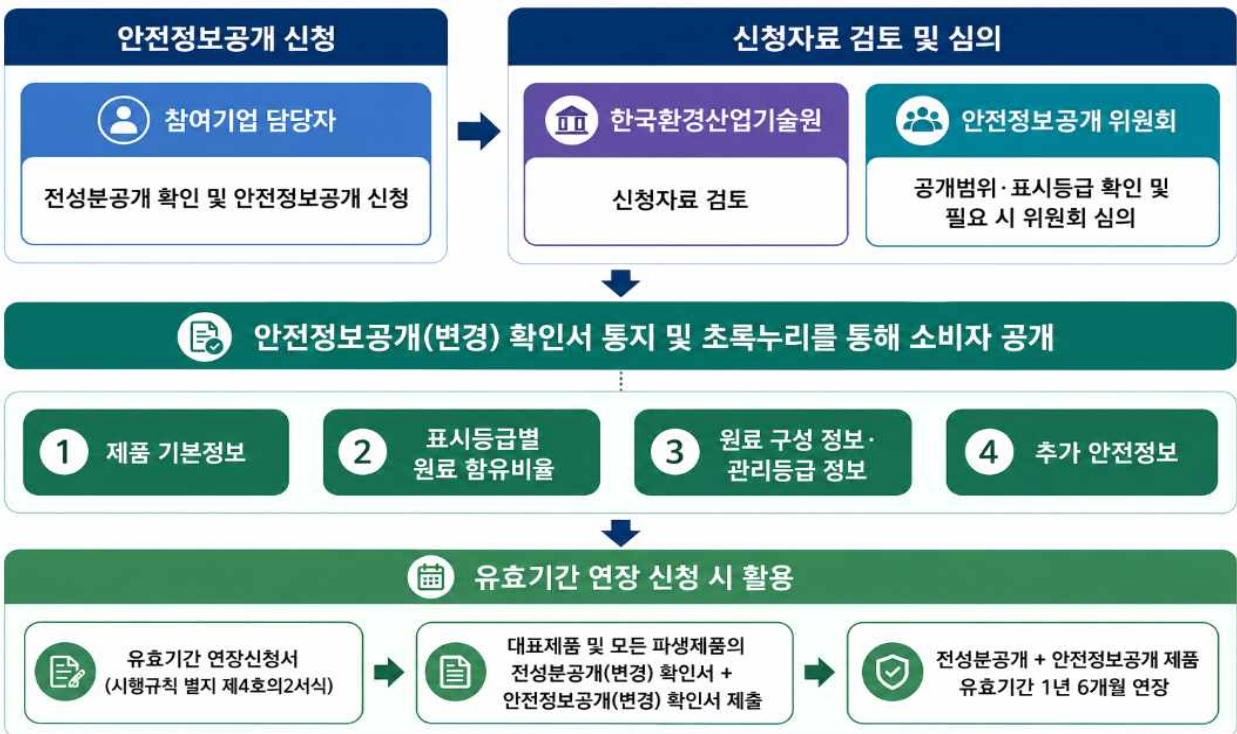
항목		기준
의도적 물질	유해물질	법에 근거를 둔 유해성 물질 등 ²⁾ 각 물질별 0.01% 이상 물질 공개
	그 외 물질	전성분공개 한 물질 중 0.1%이상 물질 공개
비의도적물질	유해물질	법에 근거를 둔 유해성 물질 등 ²⁾ 각 물질별 0.01% 이상 물질 공개
	그 외 물질	각 물질별 제품내 함량 0.5%이상 물질 공개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질
- 그 함량이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또는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에 따른 혼합물의 지정기준에 미치지 않거나,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규정」에 따른 혼합물의 분류기준에 미치지 않는 경우를 포함

나 안전정보공개 신청 절차 및 방법

1 신청 절차 및 방법

- (신청절차) 초록누리 시스템(ecolife.mcee.go.kr)을 통해 전성분공개 신청·접수·공개. 다만, 확인서는 시스템 개선 이전('26.5.12~)까지 한시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발급



- (신청방법) 초록누리 시스템을 통해 신청

(1) 초록누리 시스템에서 로그인(chemp.mcee.go.kr/login)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중점관리 물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살생물물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품에 의도적으로 함유된 나노물질

2026년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물질 제조·수입량 보고

바로가기 →

정책 및 제도 관련 문의 안내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안전기준적합 확인 신고 | ☎ 1800-0490
 살생물 물질, 살생물 제품 | ☎ 1800-4840

기술지원 문의 안내

시스템 이용 불편 또는 기능오류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안생물 신고업무 | ☎ 070-4376-0824 (신CHEMP 관련)
 살생물제품 승인업무 | ☎ 1800-4840
 ✉ supportchem@opensys.kr

(구CHEMP 관련)
 살생물물질-제품 승인업무 / 승인대상 안생물 승인업무

구CHEMP 바로가기 →

LOGIN

1 사용자ID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로그인

회원등록 ID / Password 찾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9.26.)로 중단되었던 문서24 서비스가 10.24.(금) 09:00부터 복구되어 정상적으로 접속 및 이용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로그인 후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공지사항

FAQ

종합자료실

①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2) 홈>생활화학제품>자율안전관리제도>안전정보공개 신청

🏠 생활화학제품 > 자율안전관리제도 > 안전정보공개 (변경)신청

안전정보공개 (변경)신청

제품명	신고구분	전체
진행상태 1	담당자	
신고번호	접수번호	
제출일자	1주일 1개월 3개월	

Q 검색

전체 1 10개씩 x 엑셀 다운로드

No.	진행상태	품목	제품명	물질수	담당자	제출일자
1	신청대기	방향제	향기로운 방향제	5	김한경	2026-5-12

1

① 진행상태 : 전체 또는 승인대기를 선택하여 검색 클릭하면 신청 대상 제품 확인 가능
 ② 진행상태를 확인하여 신청대기 제품을 확인 후 제품명을 클릭하여 안전정보 신청서 작성

생활화학제품 > 자율안전관리제도 > 안전정보공개 (변경)신청

안전정보공개 (변경)신청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신고한 경우 이미 등록된 제품을 검색하여 신청을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전성분 공개 신청 제품은 관리자 승인 후, 전성분공개 제품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 1234567890123 접수일시 2026-05-09 10:00:00 임시저장 신청 목록

기본제품정보 할유성분(전성분) 제품사진 정보

3 1. 신청인 정보

상호(명칭)	세명화학사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11-11-111111	성명(대표자)	홍길동
소재지(사업장)	서울시 중구 중앙로 185				
연락처	02-111-1111	팩스번호	02-111-1112		
담당자 성명	이순신	연락처	111-11-111111	전자우편	smssoft@chemp.co.kr

③ 신청인정보 : 안생품 신고시 작성한 자료가 자동 등록

4 2. 제품정보

제품명	제품명제품명	신고번호	2HB12-34-5678
구분	제조(OF) 4-1		
품목	분사형 / 호흡기 노출 가능 제형 기타 제형 ●	용도	
제형	기타제형	중량/용량/배수	
제품구분	파생제품	신규/변경 분류	변경
사용방법			
사용상 주의사항			
응급처치			

상세제형구분

구분	분류
호흡기노출제형	분무기형(포장 제외), 스프레이형, 분무형, 연수형, 연무형, 필러형 보충형(이들 제형에 사용되는 보충형 제품들 포함)
기타제형	액체형, 에멀션형(에이스트형, 로션형, 젤형), 분형, 고체형(아래와함), 막스텔형, 스틱형, 왁스형, 분말형, 티슈형, 연수형, 카트리지형, 병형, 분형, 팔레트, 팩지형, 합성물형, 덩크형, 기타 보충형(이들 제형에 사용되는 보충형 제품들 포함)

닫기

④ 제품정보 : 안생품 신고시 작성한 자료가 자동 등록

④-1 제형 : 분사형의 경우 물음표를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 후, '호흡기노출 가능 제형' 또는 '기타제형'을 선택

5 - 자율안전정보 문구 추가

사용방법	작성해주신 내용은 자율안전정보 공개페이지에만 공개됩니다.
사용상 주의사항	작성해주신 내용은 자율안전정보 공개페이지에만 공개됩니다.
응급처치	작성해주신 내용은 자율안전정보 공개페이지에만 공개됩니다.

⑤ 제품정보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에 따른 표시 정보 내용을 기재

6 - 표시사항 그림기호

표시사항	그림 기호 및 문구					
사용상 주의사항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추가 <input type="checkbox"/>	 내용물이 눈에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추가 <input type="checkbox"/>	 내용물이 눈이나 피부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장갑등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 추가 <input type="checkbox"/>	 사용 후 잔량은 잘못 사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원래의 용기에 보관하십시오 추가 <input type="checkbox"/>	 압폐된 공간에서 사용 시 환기를 충분히 하십시오 추가 <input type="checkbox"/>	 용기를 항상 밀봉하여 보관하십시오 추가 <input type="checkbox"/>
	 다른 제품과 혼용하지 마십시오 추가 <input type="checkbox"/>	 따뜻한 손으로 취급하십시오 추가 <input type="checkbox"/>	 포장을 확실하게 닫으십시오 추가 <input type="checkbox"/>	 자르거나 긁거나 부러뜨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추가 <input type="checkbox"/>	 붙어있는 압축을 분리하십시오 추가 <input type="checkbox"/>	 압출도를 파악할 선택사항이나 이곳에 파악을 드래그 해주십시오 관련 문구 작성 추가 <input type="checkbox"/>
응급처치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내십시오. 눈에 들어갔을 때는 깨끗한 물로 씻고 이상이 있을 경우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추가 <input type="checkbox"/>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으십시오 추가 <input type="checkbox"/>		 섭취하지 마십시오. 제품을 섭취한 경우 의사의 진찰을 받으십시오 추가 <input type="checkbox"/>	

⑥ 표시사항 그림기호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에 따른 표시 사항에 대한 그림 기호를 모두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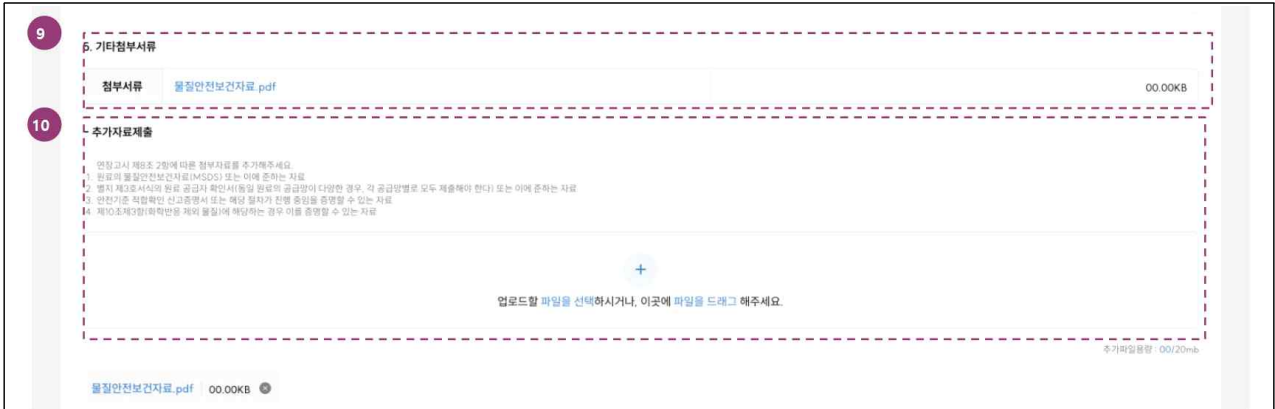
7 3. 제품성분

연번	성분명	고유번호(CAS No. 등)	배합비(%)	용도(기능)	알레르기유발 기능물질	사용제한물질	7-1 원료안전성평가 관리등급
							공용추가

8 4. 제품사진

	전면사진	후면사진
• 제품사진		

- ⑦ 제품성분 : 전성분공개 자료 자동 등록
- ⑦-1 원료안전성평가 관리등급 : 자동 등록
- ⑧ 제품사진 : 안생품 신고시 작성한 자료가 자동 등록



⑨ 기타첨부서류 : 안생품 신고시 제출한 자료가 자동 등록

⑩ 추가제출자료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원료공급자확인서, 신청서 ‘뒷면’ 유효기간 연장 대상제품 목록* 등 필수 제출서류 및 추가 필요 서류 등을 업로드(안생품 신고시 기 제출된 자료 제외)

* 신청서 ‘뒷면’ 유효기간 연장 대상제품 목록 작성방법(예시)

- 하나의 안생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에 해당하는 대표제품 및 파생제품을 모두 기재하고, 제품별 참여제도 정보를 누락 없이 표시
- 제품명은 안생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정보와 동일하게 작성
- 제품이 많은 경우 표를 추가하여 작성 가능

<작성 예시>

연번	구분	제품명	참여제도 정보
1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표 <input type="checkbox"/> 파생	맑은집다목적 세정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성분공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안전정보공개 <input type="checkbox"/> 화학물질저감우수제품
2	<input type="checkbox"/> 대표 <input checked="" type="checkbox"/> 파생	맑은집다목적 세정제 라벤더향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성분공개 <input type="checkbox"/> 안전정보공개 <input type="checkbox"/> 화학물질저감우수제품
3	<input type="checkbox"/> 대표 <input checked="" type="checkbox"/> 파생	맑은집다목적 세정제 시트러스향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성분공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안전정보공개 <input type="checkbox"/> 화학물질저감우수제품



⑪ 신청 : 안전정보공개 신청 정보를 모두 작성 후 동 페이지 상단으로 스크롤 하여 ‘신청’ 버튼 클릭하고 신청 완료

2

신청서 작성 작성방법

○ 신청서 작성 예시

‘1. 신청인 정보’ 작성 예시

> 신청인 정보는 원료안전성평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담당자 정보는 접수 확인, 보완 요청 및 평가 결과 안내에 활용되므로 실제 업무 담당자의 연락처를 정확히 작성합니다.

상호(명칭)	㈜건강제품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성명(대표자)	김OO
소재지 (사업장)	서울특별시 중구 ○○로 00, 5층			(전화번호: 02-0000-0000)	(팩스번호: 02-0000-0001)
담당자 성명	홍OO	연락처	010-0000-0000	전자우편	ex01@company.com

상호(명칭)	클린건강㈜	사업자등록번호	234-58-01010	성명(대표자)	이OO
소재지 (사업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산단로 00			(전화번호: 032-0000-0000)	(팩스번호: 032-0000-0001)
담당자 성명	박OO	연락처	010-0000-0000	전자우편	ex02@company.com

상호(명칭)	㈜에코생활	사업자등록번호	345-67-89012	성명(대표자)	최OO
소재지 (사업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로 00			(전화번호: 031-0000-0000)	(팩스번호: 031-0000-0001)
담당자 성명	진OO	연락처	010-0000-0000	전자우편	ex03@company.com

‘2. 제품 정보’ 작성 예시

- > 동일 신고번호 내 대표제품과 파생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제품별 정보가 혼동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합니다.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에는 안전기준고시 별표 5에 따른 신청제품의 표시사항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품명	맑은집다목적 세정제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	CB26-03-2026
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제조(OEM 포함) <input type="checkbox"/> 제조(ODM) <input type="checkbox"/> 수입(제조국명: , 제조사:)			
품목	세정제	용도	일반용-기타표면세정용	
제형	분사형-분무기형	중량·용량·매수	750ml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사용방법	오염된 표면에 적당량 분사한 후 마른 천 또는 스펀지로 닦아냅니다.		
	사용상 주의사항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응급처치	내용물이 눈에 들어간 경우, 깨끗한 물로 씻고 이상이 있을 경우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제품명	은은한 공간 방향제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	CB20-02-2026
구분	<input type="checkbox"/> 제조(OEM 포함)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제조(ODM) <input type="checkbox"/> 수입(제조국명: , 제조사:)			
품목	방향제	용도	일반용-실내공간용	
제형	비분사형-액체형	중량·용량·매수	200 ml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사용방법	제품 뚜껑을 열고 동봉된 스틱을 꽂아 실내공간에 세워 둡니다.		
	사용상 주의사항	제품을 넘어뜨리지 않도록 평평한 곳에 두고,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응급처치	내용물이 피부에 묻은 경우 흐르는 물로 씻고,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제품명	깨끗한 유리발수 코팅제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	CB26-01-2026
구분	<input type="checkbox"/> 제조(OEM 포함) <input type="checkbox"/> 제조(ODM)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수입(제조국명: 일본, 제조사: OO Fine Co., Ltd)			
품목	코팅제	용도	일반용-유리용	
제형	분사형-분무기형	중량·용량·매수	300ml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사용방법	코팅할 유리 표면의 이물질 제거 후 제품을 적당량 분사하고, 마른 천으로 균일하게 펴 바른 뒤 충분히 건조시킵니다.		
	사용상 주의사항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 시 충분히 환기하십시오.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응급처치	내용물이 눈에 들어간 경우 즉시 깨끗한 물로 충분히 씻고, 이상이 있을 경우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3. 제품 성분’ 작성 예시

- 성분명, 고유번호 및 배합비는 제품 식별과 공개대상 원료 확인에 활용되는 주요 정보이므로, 제품 신고자료, 전성분 자료, 제조사 제공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시험성적서(CoA) 등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필요한 경우 제조사 또는 공급망을 통해 성분 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① 연번	②성분명	고유번호 (CAS No. 등)	③배합비 (%)	④ 관리등급	⑤용도 (기능)	⑥기타정보
1	water	7732-18-5	80	4	용매	<input type="checkbox"/>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input type="checkbox"/> 사용제한물질
2	에탄올	64-17-5	10	3	세정보조제	<input type="checkbox"/>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input type="checkbox"/> 사용제한물질
3	시트르산	77-92-9	8.5	3	pH조절제	<input type="checkbox"/>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input type="checkbox"/> 사용제한물질
4	향료	-	1.5	-	향료	<input type="checkbox"/>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input type="checkbox"/> 사용제한물질
4-1	리날로올	78-70-6	1.0	2	향료 구성성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input type="checkbox"/> 사용제한물질
4-2	d,l-리모넨	138-86-3	0.5	2	향료 구성성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input type="checkbox"/> 사용제한물질

① 연번	②성분명	고유번호 (CAS No. 등)	③배합비 (%)	④ 관리등급	⑤용도 (기능)	⑥기타정보
1	water	7732-18-5	80	4	용매	<input type="checkbox"/>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input type="checkbox"/> 사용제한물질
2	에탄올	64-17-5	10	3	용매	<input type="checkbox"/>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input type="checkbox"/> 사용제한물질
3	향료	-	2.5	-	향료	<input type="checkbox"/>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input type="checkbox"/> 사용제한물질
3-1	리날로올	78-70-6	1.0	2	향료 구성성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input type="checkbox"/> 사용제한물질
3-2	d,l-리모넨	138-86-3	1.5	2	향료 구성성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input type="checkbox"/> 사용제한물질
4	Poly(oxyethylene) sorbitan monolaurate	9005-64-5	7.5	3	가용화제	<input type="checkbox"/>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input type="checkbox"/> 사용제한물질

‘3. 제품 성분’ 작성 예시

① 연번	②성분명	고유번호 (CAS No. 등)	③배합비 (%)	④ 관리등급	⑤용도 (기능)	⑥기타정보
1	water	7732-18-5	70	4	용매	<input type="checkbox"/>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input type="checkbox"/> 사용제한물질
2	에탄올	64-17-5	15	3	용매	<input type="checkbox"/>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input type="checkbox"/> 사용제한물질
3	2-프로판올	67-63-0	5	2	용매	<input type="checkbox"/>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input type="checkbox"/> 사용제한물질
4	코팅제	-	8	-	코팅제	<input type="checkbox"/>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input type="checkbox"/> 사용제한물질
4-1	Siloxanes and Silicones, di-Me	63148-62-9	6	DG	코팅성분	<input type="checkbox"/>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input type="checkbox"/> 사용제한물질
4-2	Poly(oxyethyle ne) sorbitan monolaurate	9005-64-5	2	3	유화제	<input type="checkbox"/>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input type="checkbox"/> 사용제한물질
5	시트르산	77-92-9	2	3	pH 조절제	<input type="checkbox"/>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input type="checkbox"/> 사용제한물질

3

제출 서류

- 연장기준고시에 따른 전성분공개 신청 제출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초록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 면제 가능
 - (필수) 안생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또는 해당 절차가 진행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필수) 전성분공개(변경) 확인서 또는 해당절차가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필수) 안전정보공개(변경) 신청서(연장기준고시 별지 제5호 서식)
 - (필수) 원료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 화학물질의 명칭, 함량, 고유번호(CAS No. 등) 등
 - (필수) 원료 공급자 확인서(연장기준고시 별지 제3호 서식)
 - 동일 원료의 공급망이 다양한 경우, 각 공급망별로 모두 제출

다

안전정보공개 표시등급 내용 및 표시방법

1

안전정보공개 표시등급 및 내용

표 54 원료안전성평가 관리등급별 표시등급 및 내용

원료안전성평가 관리등급	안전정보공개 표시등급	내 용
평가유보	자료 부족 (회색 ●)	유해성 정보 부족으로 인한 인체에 대한 유해성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성분
4등급	유해 우려 낮음 (파랑 ●)	인체에 대한 유해성이 낮은 성분
3등급		
2등급	용도, 제형에 따라 사용가능 (노랑 ●)	인체에 대한 유해성이 우려되나 용도, 제형에 따라 사용 가능
1등급	안전한 원료로 대체 권장 (주황 ●)	인체에 대한 유해성이 우려되어, 안전한 원료로 대체를 권장
0등급	자료 부족 (단 호흡기노출제형에 사용은 권장하지 않음) (회색 ●)	호흡기에 대한 유해성 정보가 없어 호흡기노출제형에 한하여 사용을 권장하지 않은 성분

2

안전정보공개 표시등급의 표시방법

- 안전정보공개 대상 물질은 ①에 따라 안전정보공개 표시등급의 사항을 표시
 - 필요 시 원료별 또는 표시등급별로 함유성분 정보를 그림 또는 문구로 함께 공개할 수 있음.

라 별지 서식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앞쪽)

[] 대표
[] 파생

안전정보공개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	------	------

1. 신청인 정보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사업장)	(연락처: (팩스번호:)	
담당자 성명	연락처	전자우편

2. 제품 정보

제품명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	
구분	<input type="checkbox"/> 제조(OEM포함) <input type="checkbox"/> 제조(ODM) <input type="checkbox"/> 수입(제조국명: , 제조사:)	
품목	용도	
제형	중량·용량·매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사용방법	*작성하신 내용은 안전정보공개 페이지에만 공개됩니다.
	사용상 주의사항	*작성하신 내용은 안전정보공개 페이지에만 공개됩니다.
	응급처치	*작성하신 내용은 안전정보공개 페이지에만 공개됩니다.

3. 제품 성분

①연번	②성분명	고유번호 (CAS No. 등)	③배합비 (%)	④원료안전성 평가 관리등급	⑤용도 (기능)	⑥기타정보
1-1						<input type="checkbox"/> 알레르기반응기능물질 <input type="checkbox"/> 사용제한물질
1-2						<input type="checkbox"/> 알레르기반응기능물질 <input type="checkbox"/> 사용제한물질

※ 필요 시 상기 표를 추가하여 기입

4. 제품 사진

제품 앞면	제품 뒷면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제3항에 따른 안전정보공개(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유효기간 연장 대상 제품 목록

연번	구분	제품명	참여제도 정보
	<input type="checkbox"/> 대표 <input type="checkbox"/> 파생		<input type="checkbox"/> 전성분공개 <input type="checkbox"/> 안전정보공개 <input type="checkbox"/>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input type="checkbox"/> 대표 <input type="checkbox"/> 파생		<input type="checkbox"/> 전성분공개 <input type="checkbox"/> 안전정보공개 <input type="checkbox"/>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input type="checkbox"/> 대표 <input type="checkbox"/> 파생		<input type="checkbox"/> 전성분공개 <input type="checkbox"/> 안전정보공개 <input type="checkbox"/>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첨부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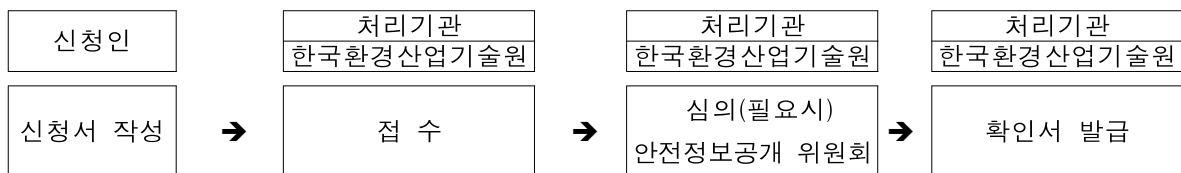
1. 안전정보공개(변경)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화학물질의 함량, 화학물질의 고유번호(CAS No. 등) 등이 적힌 원료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또는 원료 공급자 확인서(동일 원료의 공급망이 다양한 경우 각 공급망별로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2.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또는 해당 절차가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전성분공개(변경) 확인서 또는 해당 절차가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조과정에서 다른 물질과 반응하여 제품에 남아있지 않은 물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안전정보공개 변경신청 시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정보공개 확인서 및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작성 방법

1. '신청인 정보'의 '담당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자로서 안전정보공개(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2. '제품 정보'는 안전정보공개(변경)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제품에 대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한 제품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른 별표5에 따른 표시사항 정보를 기재합니다.
4. '제품 성분'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7에 따른 기준에 따라 물질정보를 기재합니다. 다만 해당정보는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신고제품의 정보와 같아야 합니다.
 - ① 연번 : 함유된 개별 성분별로 번호를 부여하며, 성분이 혼합물질인 경우 해당 혼합물질을 구성하는 성분명을 하위 번호로써 기재합니다.
 - ② 성분명 : 법이나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물질을 표기해야 하며, 법이나 고시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물질의 명칭은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cee.go.kr)에 등재된 물질명, IUPAC(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명 또는 CA(Cheical Abstracts)명에 근거하여 기재하거나 관용명으로 기재합니다.
 - ③ 배합비 : 성분의 함량을 정수로 기입해야 하되, 함유량이 1.0% 이하인 경우에는 소수점 세 번째자리까지 기재해야 함. 다만, 혼합물질을 구성하는 성분의 경우 해당 혼합물질 제조업체에서 제공한 자료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상에 표시된 사항 및 신고자가 알고 있는 정보를 기재합니다.
 - ④ 원료안전성평가 관리등급: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제7조제3항에 따라 초록누리(ecolife.mcee.go.kr)에 공개된 자료에 근거하여 기재합니다. 다만 해당 원료가 원료안전성평가 관리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료안전성평가 신청 및 평가가 선행되어야만 하며 부여된 관리등급에 근거하여 정보를 기재합니다.
 - ⑤ 용도(기능) : 해당 성분이 제품 내에서 발현하는 기능 기재합니다(예: 산도조절제, 용매 등).
5. '유효기간 연장 대상 제품 목록' 항목은 해당 신고번호에 포함된 대표제품 및 모든 파생제품의 유효기간 연장 요건(전성분공개 및 안전정보공개 또는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참여현황을 누락없이 기재합니다(필요 시 행을 추가하여 작성).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IV.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신청방법**

가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개요

1 목적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연장기준고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선정기준고시’)에 따른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 취지와 신청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신청 전 확인사항, 제출자료, 선정심사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함.

2 화우품 신청 대상 및 요건

-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생품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아 신고를 완료한 제품으로서 전성분공개를 완료한 제품을 대상으로 함.
- 신청 요건
 - (필수) 전성분공개 제도 참여 또는 참여 동시신청 제품
 - (필수) 원료안전성평가 관리등급이 있는 원료로 이뤄진 제품
 - (필수) 영업비밀 원료를 선정심사 목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제품
 - (필수) 제품 원료 정보에 대하여 선정심사 목적으로 심사기관에 공개할 수 있는 제품

3

화우품 선정 기준

○ 서류심사 기준

- 신청 요건

- 1)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연장기준고시 제7조제3항에 따라 초록누리에 공개된 최신의 원료안전성평가 목록에 기반하여, 제품 내 관리등급 0~2 및 평가유보 화학물질의 사용을 현저히 줄이거나 관리등급 3~4 화학물질로 대체해야 함.
- 2) 다만, 원료안전성평가 목록에 없는 화학물질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연장기준고시 제7조에 따른 원료안전성평가가 완료된 이후에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 심사를 신청해야 함.
- 3)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품을 호흡기노출제형과 기타제형으로 구분해야 함.

- 세부 심사 기준

- 1)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은 원칙적으로 관리등급 3 또는 4의 화학물질이어야 함.
- 2) 1)에도 불구하고, 관리등급 2 화학물질의 총합량 또는 평가유보 화학물질의 총합량이 각각 1.0 % 미만까지는 포함될 수 있음.
- 3) 관리등급 2 화학물질의 총합량이 1.0 % 이상인 경우에도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연장기준고시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선정위원회에 심의를 통하여 인정된 경우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해당 화학물질이 화학반응에 의해 제거되는 경우
 - 원료안전성평가에서 확인된 화학물질의 유해성 노출경로가 제

품의 사용과 관련이 없는 경우

- 4) 1) 및 2)에도 불구하고, 안전기준고시 별표 6에 따른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의 총합량은 제품 내 0.01 % 미만이어야 함.

○ 현장심사 기준

- 심사 요건

- 1) 현장심사는 심사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상의 공장 및 사업장 등의 운영에 관한 기록(시제품 생산기록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실시
- 2) 아래의 세부 심사 기준 항목에 모두 적합해야 함.

- 세부 심사 기준

1) 일반 관리

심사 기준	
가)	<p>신청제품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사내표준 및 관리규정을 제·개정 관리하고, 관련 업무를 사내표준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으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심사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원료 선정부터 제품 출하까지의 전과정에 대한 사내표준 제정, 관리 여부 확인 (제품표준, 자재/원료 표준, 공정관리 및 제조/검사설비 관리표준 등) • ISO 9001 인증기업은 적합으로 평가
나)	<p>품질관리 책임자의 책임·권한에 따라 외부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조직, 인력 보유 여부 확인 • 권한과 책임 등의 문서화 여부 확인 • ISO 9001 인증기업은 적합으로 평가

2) 화학물질 관리

구분	심사 기준
원료 선정	<p>가) 제품 원료의 화학물질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있으며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기준에 적합한 원료를 채택하고 있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별 제조-공급사에서 제공하는 원료 성분확인서, MSDS, 시험성적서 등 원료의 정보를

구분	심사 기준
	<p>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보유 여부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 제조사·공급사의 변경, 원료의 성분 변경 사항 등을 문서(관리대장)로 관리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최신화하고 있는지 확인 ※ 제조자에 따라 화학물질의 구성 비율이나 성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매하려는 원료의 화학물질 정보를 확인한다.
원료 구매	<p>나) 신청 제품의 원료 정보와 생산 제품에 사용하고 있는 원료 정보가 일치하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재료 입고 시 검사(Incoming Quality Control) 시행 여부 확인 (원료 성분확인서와 공급자 시험성적서 등으로 대체 가능) • 보관, 사용 원료의 내역이 제출서류와 일치하는지 확인
원료 보관	<p>다) 원료는 오염이나 변질 등의 우려가 없도록 입고와 보관 및 출고 내역을 문서로 관리하고 있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료의 유형, 위험도, 용도, 유효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정된 공간에서 구획을 정해 보관 및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 • 사용 후 남은 원료의 용기 밀봉의 적절성 및 개봉일 표시 확인 • 폐원료 처리방식의 적절성 확인
원료 식별	<p>라) 화학물질 함유 원료의 식별 상태가 양호한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기에는 물질명(CAS No. 등)과 제조번호, GHS 표지 등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소분하여 담은 용기 포함) • 식별 표시가 없는 화학물질이 현장에 보관되고 있는지 확인 • 원료가 실제 측정, 투입, 혼합되는 현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보관 중인 원료에 대해 다른 원료와 혼재되더라도 쉽게 식별되는지 확인
제조 공정 관리	<p>마) 현장 작업자가 사내표준에 규정된 작업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 표준에 따라 작업하고 있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지시서 등이 표준에 따르고 있는지, 실제 현장에서 이에 따라 제조되고 있고 공정별 관리 항목이 적절히 통제되고 있는지 확인 - 작업지시서와 실제 투입 원료 내역 일치 여부, 계량의 정밀도 확인 - 원료 투입 계량·계측기 교정 내역 등 확인 • 외국인 노동자가 작업을 할 경우 작업표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 그림 등을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
제조 설비 관리	<p>바) 설비와 화학물질의 특성을 반영한 사내표준에 따라 제조설비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의 생산라인에서 복수의 제품 생산 시 제품 전환 과정에서 이전 제품의 원료 잔류, 세척제 잔류 등의 오염 유발 요소 확인

구분	심사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라인 별로 오염 방지를 위한 세척 주기, 세척에 사용되는 물질에 대한 적정성 확인 • 설비의 노후화, 균열, 부식, 변질 등에 대한 적정 관리 여부 확인
포장	<p>사) 포장 과정에서 오염 유발 요소를 확인 및 관리하고 있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 제품 또는 현재 생산 제품 이외의 용기 잔류 여부 등 관리 상태 확인 • 포장 용기의 변형이나 내부의 불순물 여부 등 관리 상태 확인 • 포장 용기의 용출시험 여부 확인 (용출이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기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 용기 제조업체의 시험성적서, 확인서 등으로 확인 가능)
시험 검사	<p>아) 사내표준에 따라 제품검사(필요한 경우 중간검사 포함)를 시행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제품·공정 등의 개선에 반영 및 활용하고 있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및 외부공인시험·검사기관 시험성적서, 성능확인서 등 확인 • 부적합 제품 발생 요인, 조치사항(절차 및 방법), 조치결과 등을 문서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 <p>※ 예: 부적합보고서, 부적합제품관리대장, 부적합 원인 분석보고서, 시정 및 예방조치 보고서, 품질보고서, 재발방지교육보고서 등</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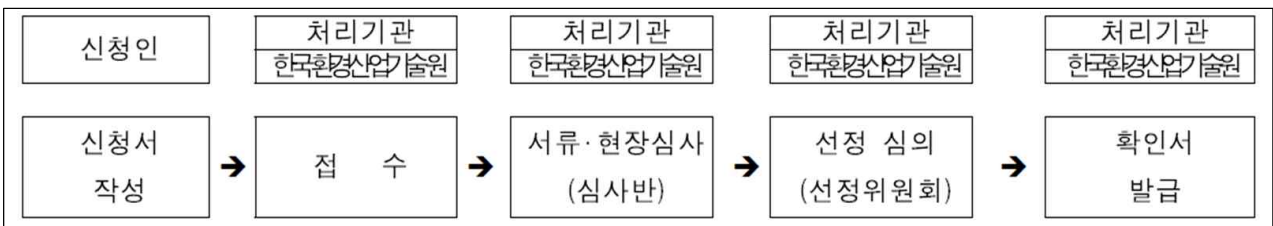
3) 성능 관리

심사 기준	
가)	<p>제품의 고유성능을 정량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의 고유성능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험성적서 등으로 이를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
나)	<p>특정 화학물질의 대체나 함량 변경이 제품의 고유성능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하여, 규정된 고유 성능 기준과 절차·방법에 따라 성능시험검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내표준 등에 성능 확인 주기, 절차, 방법 등 설정 여부 확인 • 화학물질 대체나 변경한 경우, 제품의 고유성능을 동등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성능확인서, 시험성적서 등 확인

나 화우품 신청 절차 및 방법

1 신청 절차 및 방법

- (신청절차) 초록누리 시스템(ecolife.mcee.go.kr)을 통해 화우품 신청·접수. 다만, 확인서는 시스템 개선('26.7.1~)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발급



- (신청방법) 초록누리 시스템 또는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신청 사이트*(safetychem.org/review/list.php)를 통해 신청

* 초록누리 시스템 개선('26.7.1~) 이전까지 한시적 운영



① 회원가입(기업회원) 및 로그인

-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를 통해 안내 또는 보완 회신이 되므로 확인 필수

우수제품 화우품소개 심사안내 **심사신청** 화우품소식

신청하기

<필수제출서류안내>

1. 심사(변경)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다운로드**
2. 원료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3. 원료공급자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 **다운로드**

※ 각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서식에 맞게 작성하되 반드시 해당기업의 직인을 날인하여 첨부해 주십시오
 ※ MSDS 등 자료수가 많은 경우는 압축파일로 올려주십시오

회사명:

담당자명: admin

연락처:

이메일:

1. 심사(변경)신청서	파일 선택	선택된 파일 없음
2. MSDS, 전성분정보	파일 선택	선택된 파일 없음
3. 원료공급자확인서	파일 선택	선택된 파일 없음
4. 기업의 노력사항	파일 선택	선택된 파일 없음
5. 기타1	파일 선택	선택된 파일 없음
6. 기타2	파일 선택	선택된 파일 없음

3 신청하기

② 필수 제출 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③ 신청 정보 및 자료를 모두 작성 및 업로드 완료한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각 서식(3종)은 필수 사항으로 누락시 신청불가

신청목록 화우품소개 심사안내 **심사신청** 화우품 소식 문의(Q&A) 회원

내일까지 추가제출해도 될까요?
2024-08-26 12:01:42 삭제

신청기업 담당자 메일로 전송

보완요청
MSDS가 누락되었습니다. 추가 제출해주세요
2024-08-26 12:01:00 삭제

관리자메모

신청완료 검토중 **보완요청** 반려 심사중 심사완료 목록

신청내용

이름	Test
회사명(소속)	고양녹색소비자연대
연락처	010-7700- <input type="text"/>
이메일	gconsumer@daum.net
1. 심사(변경)신청서	01 신청서_ <input type="text"/> .pdf
2. MSDS, 전성분정보	02-1 전성분정보_ <input type="text"/> .xlsx
3. 원료공급자확인서	원료공급자확인서.zip
4. 기업의 노력사항	04 노력사항_ <input type="text"/> .pdf
5. 기타1	추가1 82211807100_ <input type="text"/> .pdf
6. 기타2	추가2 LoC_TECHNC <input type="text"/> .pdf

- 신청완료 이후 서류 보완 요청이 가능

- 안내사항 : 신청완료 → 심사중 → 심사완료 순으로 안내 메시지 전송

- (신청주체) 제조사(OEM, ODM 포함), 유통사
 - 제조사 제품 신청 : 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기업은 단독으로 심사 신청
 - 유통사 제품 신청 : 유통사는 자사에서 판매하는 제품(PB제품 등)에 대해 신청. 이때 해당 제품을 생산한 제조사의 협조 요청 필요
 - OEM·ODM 제품 신청 : 유통사와 공급계약을 맺고 제품을 납품하는 제조사도 해당 제품의 안전 관리 주체로서 단독으로 심사를 신청
- (신청양식) 신청서류명: (서류명)업체명_제품명(신고번호)
 - * 예시 (화우품신청서)환기원_환기원 세정제(CA10-12-3456)
- 유의사항
 - 기업이 신청을 하면 심사반은 먼저 서류 검토 실시. 이 때 필수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 요청 가능
 - 모든 서류가 구비되면 서류심사를 진행. 서류심사에는 원료의 전성분 공개자료의 충실성, 공개된 전성분과 함량을 검토하고 비의도적 물질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확인
 - 제출된 자료에 대한 검토가 완료된 후 현장심사가 진행. 현장심사는 모든 신청제품에 대해 진행하는 것이 원칙

2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안내) 연장기준고시에 따른 전성분공개 신청 제출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초록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 면제 가능
 - (필수) 안생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또는 해당 절차가 진행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필수) 전성분공개(변경) 신청서(연장기준고시 제2호 서식)
 - (필수) 원료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 화학물질의 명칭, 함량, 고유번호(CAS No. 등) 등
 - (필수) 원료 공급자 확인서(연장기준고시 별지 제3호 서식)
 - 동일 원료의 공급망이 다양한 경우, 각 공급망별로 모두 제출
 - (필수) 현장심사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 현장심사 기준 적합 확인 자료는 현장심사시 제출할 수 있음.

다

체크리스트 및 별지 서식

1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표 76. 화우품 신청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구분	점검내용	확인
공통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의 유효기간 만료 전인가?	
공통	동시신청인 경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가 영업일기준 30일 이내인가?	
공통	동시신청인 경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를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신청을 하였는가?	
공통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 신청서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정보가 동일한가?	
신청서 작성	직인 날인 및 날짜 작성이 되었는가?	
신청서 작성	기재된 제품정보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가 완료되었는가?	
신청서 작성	뒷면의 동일 신고번호의 대표·파생제품 참여제도 정보가 모두 기재되었는가?	
신청서 작성	제품내 모든 성분(원료)정보가 모두 기재되었는가? (성분명, 고유번호, 배합비, 관리등급, 용도 등)	
신청서 작성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정보를 모두 기재하였는가?	
증빙서류	하기의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는가?	
	1.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 신청서	
	2. 전성분공개 확인서 또는 (동시신청시) 신청서	
	3. 안생품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또는 적합확인 결과서	
	4. 제품내 모든 원료 공급자 확인서	
	5. 제품내 모든 원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6. 제품내 모든 원료공급자 제공 증명자료	
7. (해당시) 원료안전성평가 신청서		

2

화우품 신청 서식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서식]

(앞쪽)

[] 대표

[] 파생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남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	------	------

1. 신청인 정보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사업장)	(연락처:) (팩스번호:)	
담당자 성명	연락처	전자우편

2. 제품 정보

제품명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	
구분	<input type="checkbox"/> 제조(OEM포함) <input type="checkbox"/> 제조(ODM) <input type="checkbox"/> 수입(제조국명:) 제조사:)	
품목	용도	
제형	중량·용량·매수	
제조 공장	상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연락처
	소재지	(연락처:) (팩스번호:)

3. 제품 성분

제품 성분						
① 관리등급 제형		② 호흡기노출제형			③ 기타제형	
④ 연번	⑤ 성분명	고유번호 (CAS No. 등)	⑥ 배합비(%)	⑦ 원료안전성 평가 관리등급	⑧ 용도(기능)	비고
1-1						
1-2						

※ 필요 시 상기 표를 추가하여 기입

4. 제품 사진

제품 앞면	제품 뒷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제1항,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유효기간 연장 대상 제품 목록

연번	구분	제품명	참여제도 정보
	<input type="checkbox"/> 대표 <input type="checkbox"/> 파생		<input type="checkbox"/> 전성분공개 <input type="checkbox"/> 안전정보공개 <input type="checkbox"/>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input type="checkbox"/> 대표 <input type="checkbox"/> 파생		<input type="checkbox"/> 전성분공개 <input type="checkbox"/> 안전정보공개 <input type="checkbox"/>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input type="checkbox"/> 대표 <input type="checkbox"/> 파생		<input type="checkbox"/> 전성분공개 <input type="checkbox"/> 안전정보공개 <input type="checkbox"/>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첨부
서류

1.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변경)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화학물질의 함량, 화학물질의 고유번호(CAS No. 등) 등이 적힌 원료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또는 원료 공급자 확인서(동일 원료의 공급량이 다양한 경우 각 공급망별로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2. 전성분공개(변경) 확인서 또는 해당절차가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제16조제2항제4호에 따라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의 현장심사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조과정에서 다른 물질과 반응하여 제품에 남아있지 않은 물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 변경신청 시 제20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 확인서 및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6.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작성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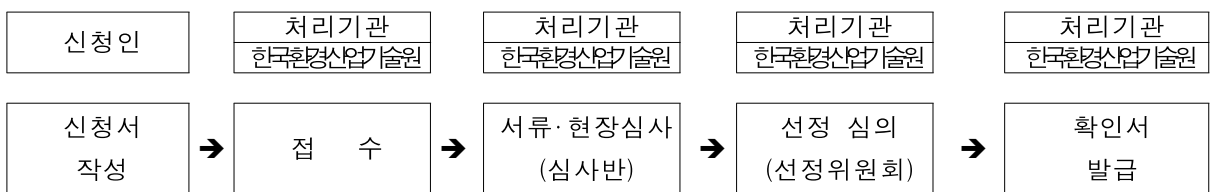
1. '신청인 정보'의 '담당자'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자로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2. '제품 정보'는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변경)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제품에 대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한 제품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3. '제품 정보'란 중 제조공장 정보 작성시 제조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 제조공장정보를 모두 기재합니다.
4. '제품 성분'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7에 따른 기준에 따라 물질정보를 기재합니다. 다만 해당정보는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신고제품의 정보와 같아야 합니다.
 - ① 관리등급 제형 : 하기 표에 따른 분류에 따라 제형을 기재합니다.

호흡기노출가능제형	분무기형(폼형 제외), 스프레이형, 혼증형, 연소형, 연무형, 필터형, 보충형, 기타
기타제형	분무기형(폼형), 액체형, 에멀션형(페이스트형, 로션형, 젤형 포함), 폼형, 고체형(타블렛형, 파스텔형, 스틱형 포함), 핫멜트형, 분말형, 티슈형, 캡슐형, 카트리지형, 펜형, 붓형, 팔찌형, 패치형, 함침물형, 탱크형, 보충형, 기타

- ② 연번 : 함유된 개별 성분별로 번호를 부여하며, 성분이 혼합물질인 경우 해당 혼합물질을 구성하는 성분명을 하위 번호로써 기재해야 합니다.
 - ③ 성분명 : 법이나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물질명을 표기해야 하며, 법이나 고시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물질의 명칭은 화학물질 안전원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cee.go.kr)에 등재된 물질명, IUPAC(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명 또는 CA(Chemical Abstracts)명에 근거하여 기재하거나 관용명으로 기재합니다.
 - ④ 배합비 : 성분의 함량을 정수로 기입해야 하되, 함유량이 1.0% 이하인 경우에는 소수점 세 번째 자리까지 기재해야 함. 다만, 혼합물질을 구성하는 성분의 경우 해당 혼합물질 제조업체에서 제공한 자료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상에 표시된 사항을 기재합니다.
 - ⑤ 원료안전성평가 관리등급: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제7조제3항에 따라 초록누리(ecolife.mcee.go.kr)에 공개된 자료에 근거하여 기재합니다.
 - ⑥ 용도(기능) : 해당 성분이 제품 내에서 발현하는 기능 기재합니다(예: 산도조절제, 용매 등).
5. '유효기간 연장 대상 제품 목록' 항목은 해당 신고번호에 포함된 대표제품 및 모든 파생제품의 유효기간 연장 요건(전성분공개 및 안전정보공개 또는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참여현황을 누락없이 기재합니다(필요 시 행을 추가하여 작성).

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V.

**원료안전성 평가
신청방법**

가 원료안전성 평가 개요

1 목적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이하 '연장기준고시')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의 유해성 항목별로 유해성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관리등급을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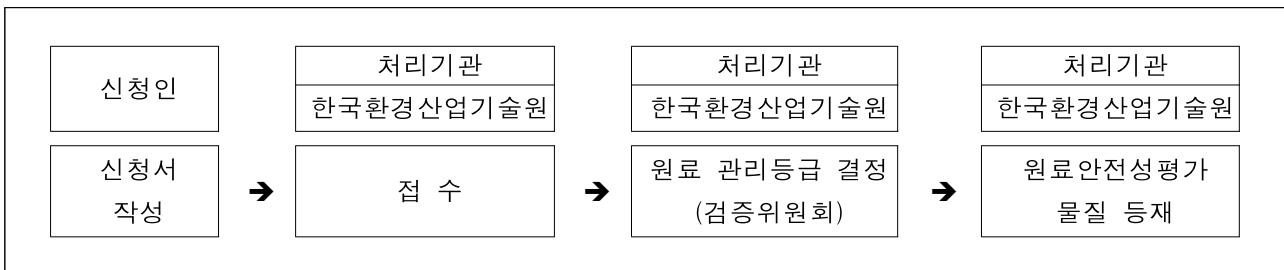
2 안전정보공개 대상

-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생품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아 신고를 완료한 제품으로서 안전정보공개 및 화우품을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

나 원료안전성 평가 신청 절차 및 방법

1 신청 절차 및 방법

- 신청절차



- (신청방법) 전자메일(center@keiti.re.kr)로 접수
- 초록누리 시스템 기능 개선 이전('26.5.12~) 한시적 이메일 접수

○ (이메일 신청양식)

- 메일제목: [원료안전성평가]업체명_제품명(신고번호)
- 파일명: (원료안전성평가)업체명_제품명(신고번호)
- * 예시 (원료안전성평가)환기원_환기원 세정제(CA10-12-3456)

2 제출 서류 및 작성 방법

○ 제출서류

- (필수) 원료안전성 평가 신청서(연장기준고시 별지 제1호 서식)

○ 신청서 작성 방법

- (신청인 정보) 원료안전성평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신청인은 안생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를 말하며, 신청서 양식에 따라 제조·수입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소재지, 담당자명, 연락처 및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

‘1. 신청인 정보’ 작성 예시

> 신청인 정보는 원료안전성평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담당자 정보는 접수 확인, 보완 요청 및 평가 결과 안내에 활용되므로 실제 업무 담당자의 연락처를 정확히 작성합니다.

상호(명칭)	(주)건강제품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성명(대표자)	김OO
소재지 (사업장)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00, 5층			(전화번호:	02-0000-0000)
				(팩스번호:	02-0000-0001)
담당자 성명	홍OO	연락처	010-0000-0000	전자우편	ex01@company.com

상호(명칭)	클린건강㈜	사업자등록번호	234-58-01010	성명(대표자)	이OO
소재지 (사업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OO산단로 00			(전화번호:	032-0000-0000)
				(팩스번호:	032-0000-0001)
담당자 성명	박OO	연락처	010-0000-0000	전자우편	ex02@company.com

- (원료 정보) 안전정보공개(변경) 또는 화우품 선정 받으려는 제품 내 성분 중 원료안전성평가를 신청하려는 성분에 대한 정보를 기재. ①성분명, 고유번호, ②원료 유형, ③원료 제형, ④용도, ⑤사용범위, ⑥제조사 또는 공급사, ⑦제조국, ⑧사용 제품 품목 및 ⑨사용 제품 제형 등을 신청서 양식에 따라 작성

‘2. 원료 정보’ 작성 예시

- > 원료 정보는 원료안전성평가를 신청하려는 성분별로 작성합니다.
- > 성분명, 고유번호, 사용범위 및 제조사/공급사 정보는 제품 신고정보, 전성분 자료, SDS, 원료 성분자료 등과 일치하도록 기재합니다.
- > 동일 원료가 여러 제품 품목 또는 제형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과 제형을 모두 기재합니다.

①성분명	(국문) <i>트리메틸보레이트</i>	(영문) <i>Trimethyl borate</i>	
고유 번호	<input checked="" type="checkbox"/> CAS No. <input type="checkbox"/> EC No. <input type="checkbox"/> 기타 (고유번호: 121-43-7)		
②원료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단일 <input type="checkbox"/> 혼합 <input type="checkbox"/> 기타	③원료 제형	액체
④용도(기능)	안정화제	⑤사용범위(w/w%)	0.1-0.5%
⑥제조사/공급사	OO케미칼	⑦제조국	대한민국
⑧사용 제품 품목	코팅제, 접착제	⑨사용 제품 제형	액체형

①성분명	(국문) <i>트리메틸보레이트</i>	(영문) <i>Trimethyl borate</i>	
고유 번호	<input type="checkbox"/> CAS No. <input checked="" type="checkbox"/> EC No. <input type="checkbox"/> 기타 (고유번호: 204-853-1)		
②원료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단일 <input type="checkbox"/> 혼합 <input type="checkbox"/> 기타	③원료 제형	고체
④용도(기능)	첨가제	⑤사용범위(w/w%)	0.05-0.2%
⑥제조사/공급사	OOMaterials Ltd.	⑦제조국	독일
⑧사용 제품 품목	특수목적코팅제, 제거제	⑨사용 제품 제형	액체형

①성분명	(국문) <i>트리스(2-클로로에틸)인산</i>	(영문) <i>Tris(2-chloroethyl) phosphate</i>	
고유 번호	<input checked="" type="checkbox"/> CAS No. <input type="checkbox"/> EC No. <input type="checkbox"/> 기타 (고유번호: 115-96-8)		
②원료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단일 <input type="checkbox"/> 혼합 <input type="checkbox"/> 기타	③원료 제형	액체
④용도(기능)	가소제, 난연 보조제	⑤사용범위(w/w%)	0.1-0.3%
⑥제조사/공급사	OOFine Chemical Co., Ltd.	⑦제조국	일본
⑧사용 제품 품목	접착제	⑨사용 제품 제형	액체형

※ 위 작성 예시는 신청서 작성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신청 시에는 제품 신고정보, 전성분 자료, SDS, 원료 성분자료 등 신청자가 보유한 자료와 일치하도록 작성 필요

다 별지 서식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대표
[] 파생

원료안전성평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	------	------

1. 신청인 정보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자 성명	연락처	전자우편

2. 원료 정보

①성분명	(국문)	(영문)
고유 번호	<input type="checkbox"/> CAS No. <input type="checkbox"/> EC No. <input type="checkbox"/> 기타 (고유번호:)	
②원료 유형	<input type="checkbox"/> 단일 <input type="checkbox"/> 혼합 <input type="checkbox"/> 기타	③원료 제형
④용도(기능)	⑤사용범위(w/w%)	
⑥제조사/공급사	⑦제조국	
⑧사용 제품 품목	⑨사용 제품 제형	

①성분명	(국문)	(영문)
고유 번호	<input type="checkbox"/> CAS No. <input type="checkbox"/> EC No. <input type="checkbox"/> 기타 (고유번호:)	
②원료 유형	<input type="checkbox"/> 단일 <input type="checkbox"/> 혼합 <input type="checkbox"/> 기타	③원료 제형
④용도(기능)	⑤사용범위(w/w%)	
⑥제조사/공급사	⑦제조국	
⑧사용 제품 품목	⑨사용 제품 제형	

※ 필요 시 상기 표를 추가하여 기입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제 5항에 따라 원료안전성평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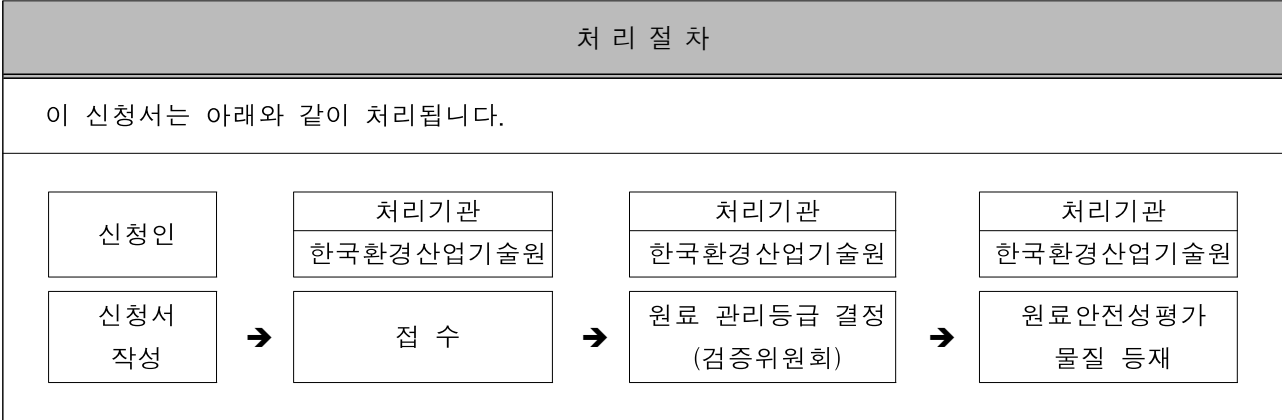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m²]

작성 방법

1. '신청인 정보' 의 '담당자' 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자로서 원료안전성평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2. '원료 정보' 란은 안전정보공개(변경) 또는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변경)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제품 내 성분으로서 원료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성분에 대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 ① 성분명 : 법이나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물질명을 표기해야 하며, 법이나 고시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물질의 명칭은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cee.go.kr)에 등재된 물질명, IUPAC(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명 또는 CA(Chemical Abstracts)명에 근거하여 기재하거나 관용명으로 기재합니다.
 - ② 원료 유형 : 단일물질, 혼합물질, 기타 물질 등 원료의 분류체계 선택하여 체크박스 표시합니다.
 - ③ 원료 제형 : 해당 원료의 물리적 형태(액체, 고체, 기체, 젤 등)를 기재하며 혼합물인 경우 최종 공급되는 상태를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 ④ 용도(기능) : 해당 성분이 제품 내에서 발현하는 기능 기재합니다(예: 산도조절제, 용매 등).
 - ⑤ 사용범위 : 해당 원료가 사용 제품에 사용되는 범위를 무게를 통한 비율로 환산하여 기재합니다.
 - ⑥ 제조사/공급사 : 원료를 실제 생산한 제조사 및 국내 유통을 수행하는 공급사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 ⑦ 제조국 : 원료가 최종적으로 합성되거나 가공된 국가명을 기재해야 하며, 다국적기업일 경우 실제 생산공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 ⑧ 사용 제품 품목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세부품목(예: 세정제, 제거제 등) 중 해당 원료가 적용되는 제품의 모든 품목을 기재합니다.
 - ⑨ 사용 제품 제형 : 해당 원료가 포함된 최종제품의 물리적 형태를 기재하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2에 따른 분류를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부록

용어와 정의

용어	정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이하 '안생품')	기후부 장관이 화학제품안전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위해성 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공개	안생품에 함유된 화학물질 목록을 연장기준고시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제조·수입자가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말함
안전정보공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원료 성분의 유해성에 따른 원료안전성평가 결과를 소비자가 시각적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연장기준고시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급으로 표시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것 말함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중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사용을 현저히 줄이거나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을 보다 위해성이 낮은 화학물질로 대체한 제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말함
원료안전성평가	원료의 유해성 항목별로 유해성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관리 등급을 평가하는 과정
비의도적 물질	불순물 등과 같이 원료 또는 제품의 제조 과정뿐만 아니라 보관 및 포장 등 공정 전반에서 비의도적으로 포함된 물질을 말하며, 1) 원료 또는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생성되거나, 2)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반응을 통해 다른 물질로 변했어야 하지만 미량 남아있거나, 3) 원료 또는 제품의 제조 과정뿐만 아니라 보관 및 포장 등 공정 전반에서 혼입을 통해 미량 존재하는 물질 등을 포함
의도적 물질	제품의 기능을 위하여 원료 또는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사용된 모든 물질
제품에 함유된 모든 성분	함량에 관계없이 제품의 기능을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한 물질과 불순물 등 비의도적으로 포함된 물질을 포함
생활화학제품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
원료	생활화학제품 제조 시 사용되는 모든 화학물질
유해성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
유해성 수준	본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따라 원료의 유해성 값의 정도를 단계별로 분류한 것을 말하며, 유해성 항목별로 '매우높음(VH)', '높음(H)', '중간(M)', '낮음(L)'과 같이 4단계로 구분
관리등급	원료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0등급부터 4등급까지 및 평가유보로 구분하여 원료(화학물질)별로 부여되는 단일 등급

용어	정의
인체 등유해성 물질	화평법 제2조제6조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제2조제6조의2에 따른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제2조제6조의3에 따른 ‘생태유해성물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화학물질
금지물질	화평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한 화학물질
제한물질	화평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한 화학물질
허가물질	화평법 제2조7호에 따른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화평법 제2조제10의2호에 따라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어 지정된 화학물질
나노물질	「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화학물질 ①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나노미터에서 100나노미터인 입자의 개수가 50퍼센트 이상 분포하는 물질 또는 ②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나노미터 이하인 풀러렌(fullerene), 그래핀 플레이크(graphene flake) 또는 단일벽 탄소나노튜브
살생물물질	「화학제품안전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無害化) 또는 억제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
호흡기 노출 가능 제형	생활화학제품 제형 중에서 ‘분무기형, 스프레이형, 훈증형, 연소형, 연무형, 필터형’을 말하며, 해당 제형에 사용되는 보충형 제품도 포함하며 분무기형 중 폼형은 제외함 ※ 단, 호흡기 노출 가능 제형이더라도 발생 입자의 크기 및 사용 방식 등 특성상 호흡 노출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것은 제외할 수 있음
기타 제형	호흡기 노출 가능 제형을 제외한 다른 모든 제형
원료	생활화학제품 제조시 투입되는 모든 화학물질
구성비	원료의 양을 부피의 비(%) 또는 질량의 비(wt%)로 나타낸 것

제·개정 이력

연번	개정일자	주요내용
1	2026. 05. 12.	- 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 자료는 배포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Version 1.0(2026.05.12)